

# 예 산 총 칙

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81,904,979	11,457,149
일반회계	377,291,107	11,318,733
일반회계	377,291,107	11,318,733
기타특별회계	4,613,872	138,416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2,467,565	74,027
주택사업특별회계	233,440	7,003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874,680	26,240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494,850	14,846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543,337	16,300

제 2 조   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

제 3 조   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

제 4 조   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

제 5 조  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

제 6 조   지방채 발행승인액은 7,093,000천원으로 한다

제 7 조   일반회계 예비비는 4,519,050천원으로 한다

제 8 조   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

제 9 조   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